

# 낙농자원팀 배합사료 구입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에 있어 경기도축산진흥센터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배합사료 구입 및 공급에 대한 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의 배합사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 **제3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본 배합사료 공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업체선정 지연 등 2개월 내 새로운 계약이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최대 2개월) 할 수 있다.

(※ 지체 시, 센터 내 종축 사양관리에 지대한 문제 발생)

**제4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배합사료 1kg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제세와 공과금 등(운반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배합사료 사용량)** 배합사료 구매량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정한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축산진흥센터”에 지급한다.

**제7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샘플 제출 및 “발주기관”의 감독관 확인을 받아 견본품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고, 계약 후 납품 시에는 샘플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본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성분등록을 필한 제품으로써 “발주기관”이 제시한 성분규격서를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 및 지정장소에 정량의 정품을 납품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합사료를 주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대의 경우 200포 이상, 벌크의 경우 7톤 이상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배합사료를 납품하였을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8조(방역)** ① “계약상대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전염성질병 발생 시 공장 또는 하치장에서 당일 최초 운행차량으로 국가방역 체계를 준수하여 방역 및 소독절차 이행 후 “발주기관”의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인근지역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전염성질병 발생으로 방역지역에 해당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정차량을 고정배치·운영하고, “발주기관”이 명시한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지정차량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의 청구)** ① 납품한 월말 1개월 단위로 “계약업체”의 지급 요청서면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업체”는 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 반드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한다.

③ “계약업체”는 청구금액의 1.5% 상당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계약단가보다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증감비율에 따라 할증하거나 할인하여 납품한다.

※ 기준가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계약상대자”의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1000분의 1.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 다만, 천재지변, 전란 혹은 “발주기관” 이 미리 승인한 경우 제외

**제12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발주기관”과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불성실하거나 배합사료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소급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배합사료가 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불량으로 판명된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에도 공급이 없거나 요청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경우.
3. 납품고지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때.
4. 고의로 공장도가의 증감을 신고하지 않아 불리한 납품가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사료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종축사양관리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제14조(부정당업자 제재)** “발주기관”이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였을 경우,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결정에 의하며, 합의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의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